##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12

발의연월일: 2021. 6. 4.

발 의 자: 강준현·홍성국·조오섭

박영순 • 이규민 • 강득구

김윤덕 · 윤관석 · 이재정

문정복 · 이원택 · 이성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 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 ·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개인별 상담·지원· 관리
- 2. 상담전화 설치 운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정보제공 및 개인별상담기관의 설치·운영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립지원 관련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있다.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상담원 등 직원의 |
|       | <u> </u>                                                                                                                                                                                                                                                                                                                      |

자격과 배치기준, 상담전화 설 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